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61) 」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견**

2017. 1.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4961호)」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제2항, 제3조의2, 제33조제2항·제4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2 개정안에 대한 우리협회 의견

-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반대함
- 의료기관의 난립으로 비효율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초래할 수 있는 중별 병원 확대보다는 기존의 체계 안에서 의료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함

가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전문병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현행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재활전문병원 등 특정 과목 및 질환에서 전문병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동 법안과 같이 병원급 의료기관 분류에 있어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의과 전문과목 및 질환 등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목적과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큰 바,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특정과 병원을 의료기관의 종류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 또한 동 법안에 의하면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으로 분류해 관리를 강화토록 하자는 방안을 밝히고 있는데, 현재 많은 요양병원들이 제대로 된 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우후죽순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동 법 개정을 통해 환자에 대한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 기존의 난맥상은 그대로인 채 부실한 요양병원들이 재활병원으로 외연적인 적법성을 갖추는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실제로 사무장병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오히려 요양병원 난립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기능 재정립을 통해 재활서비스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기존의 의료자원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지원책 등을 모색하여 과도한 경쟁으로 파산하고 있는 중소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활병원의 개설주체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음

- 재활의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향후 한의사의 재활 진료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며 이는 다각적이고 복합적 분야인 '재활'분야와 관련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한방의 경우 독자적인 한방 재활의학 체계를 정립하고 있지 못한 실정인 바,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온냉경락요법 등 현대의학의 재활의학과는 거리가 먼 시술만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척추손상이나 뇌경색 등의 응급수술을 한 환자의 재활 치료 등 복합적이고 고전문적인 상황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으며 독자적인 체계와 정보축적이 없는 상태에서서 현대의학의 재활의학 분야를 모방하려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음
- 특히, 현행 건강보험 내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물리치료 항목은 난이도 및 전문성 등에 따라 '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로 구분하여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난이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한정(* 아래 고시 내용 참조)하는 등 일부 진료전문과목에 제한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해석 등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장기 부재 시

에도 수가 산정 불가하도록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결정하여 한의사들은 물리치료사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할 수도 없음

- 실제로 한의학은 영양과 만성기의 증상 위주의 학문이며, 재활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바, 한의학 관점에서 본연의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또한 고차적인 뇌활동 회복을 위한 인지재활, 언어재활, 삼킴재활, 로봇을 활용한 재활 등은 현대의학 분야에서도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며, 이는 한의계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분야라고 사료됨
-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한방재활을 빙자한 불법 현대의료기 사용을 만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음
- 아울러 학문적 원리, 교육과정, 임상적 경험 등을 충분히 쌓은 의사에게도 환자의 진단과 판독, 치료의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세밀함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재활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민의 건강수호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의협 검토의견

의료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우리협회 수정안	검토의견
제3조(의료기관) ① (생략)	제3조(의료기관) ① (현행과 같음)	-	의 료 기 관 의 난립으 로 비효율 적인 의료 기관 개설 · 운 영 을 초래할 수 있는 중별 병원 확대 보다는 기 존의 체계 안에서 의 료 자 원 들 을 적극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는 정책방 향 모색이 필요함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② ----- ----- -----.	<현행유지>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 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3. ----- ----- ----- ----- ----- ----- -----.	<현행유지>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요양병원(「정 신보건법」 제 3조제3호에 따 른 정신의료기 관 중 <u>정신병 원</u> , 「장애인 복지법」 제58 <u>조제1항제2호</u> 에 따른 의료 재활시설로서	라. ----- ----- ----- ----- <u>정신병 원으로서</u> ----- ----- -----	<현행유지>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 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58조의4(의료기관 인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재활병원은-----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 ---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재활병원의-----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8조의4(의료기관 인

<현행유지>

-

<현행유지>

-

<현행유지>

-

<현행유지>

<p>증의 신청)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u>요양병원</u>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의료재활시설</u>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증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요양병원</u> <u>의</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현행유지></p> <p>-</p>	
---	---	------------------------------	--